

의안번호	2201619
의 퇴 인	전종덕 의원
회 답 일	2024. 8. 1.
추 계 번호	24C18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대표하는 위원 2인을 추가
2	안 제23조의2 (예술인에 대한특례)	(제1항) “예술인”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에 당연 사업장가입자가 됨 ※ 예술인: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다만, 지역연금에 따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제2항) 18세 미만 예술인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봄 (제3항)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예술인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음
3	안 제23조의3 (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특례)	(제1항) 18세 이상 60세 미만 노무제공자와 사업주는 당연 사업장가입자가 됨 (제2항) 18세 미만 노무제공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봄 (제3항)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노무제공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음 ※ 노무제공자“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다만, 지역연금에 따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
4	안 제100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2항	국가는 국민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고,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조(국민연금 심의위원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위촉위원 수 확대에 따른 회의수당 증가액 등으로 이는 기존 예산 내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
2	안 제23조의2 (예술인에 대한특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23조의3 (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특례)	
4	안 제100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2항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당연 사업장가입대상자 대상이 확대되어 국민연금기금의 수입 및 지출이 증가¹⁾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될 사람의 수와 이들의 소득 수준, 향후 생애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
 - 안 제100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직종 범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술인’(고용보험만 해당)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준용할 수 있으나, 제도 간 자료 연계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고용보험

1) 국민연금기금 수입 증가액은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을 가리키고, 국민연금기금 지출 증가액은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지출을 가리킴

이나 산재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노무제공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지 않은 사람의 수를 알 수 없음

- 과거 산재보험 입직자료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사람의 수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이는 산재보험 입직 시점에 국한된 자료로 이후 산재보험 가입 중 국민연금 동시 가입 여부를 알 수 없으며, 2023년 7월 이후부터는 산재보험의 입직자료 관리 체계 변화로 해당 자료 기준으로도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²⁾

○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자가 될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기준 소득월액을 알 수 없음

- 안 제3조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의 산정기준 및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따라 기존 가입자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소득 및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을 알 수 없음
- 현행 제도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후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소득 기준이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월액을 참고하기 어려움

○ 현재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노무제공 지속·중단·재개 등을 추정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가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들의 향후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도래 시점까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기존 사업장가입자와 가입 지속 기간, 가입 유형별 이동 등의 행태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의 가입 특성을 도출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금 수급 자격을 취득할 사람(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2) 2023년 6월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중 노무제공자는 80.4만명이었고, 산재보험 입직자료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의 수는 67.3만명이었음

[표 1]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고용보험 편입 이력

구 분	신규 적용 대상
산재보험	○ (2008.7.1.~)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 (2012.5.1.~)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 기사 ○ (2016.7.1.~)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2019.1.1.~) 27종 건설기계조종사(1인 차주) ○ (2020.7.1.~)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강사 ○ (2021.7.1.~)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2022.7.1.~)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반 화물차주 ○ (2023.7.1.~) 관광통역 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 ○ (2024.1.1.~) 방과후강사
고용보험	○ (2020.12.10.~) 예술인 ○ (2021.7.1.~)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2022.1.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 화물차주(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유통배송기사),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골프장캐디

자료: 고용노동부

□ 또한,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대상자의 수와 이들의 소득 수준, 지원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 역시 부재

-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자가 될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수와 이들의 기준소득월액을 알 수 없고, 안 제100조의3은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대상자의 소득 및 종합소득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